

##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3. 10.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
-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조사위원회를 현재 시·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을 민원·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며
- 지방세법개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보완

나.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1) 당초 :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

(2) 변경 : 읍·면지역 5,000원, 동지역 6,000원

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변경함

(1) 당초 : 시·읍·면지역에 둔다.

(2) 변경 : 시지역에 둔다.

라.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규정 삭제

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

(1) 당초 : 제조담배

(2) 변경 : 담배

바.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정

(1) 당초 : 도시계획법규정

(2) 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당초 : 도시계획구역

(2) 변경 : 도시지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03. 8. 13 ~ 9. 3)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개인균등할 세율 운영 개선 권고공문

##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3,0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4,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33조중 “시·읍·면”을 “시”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4조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47조중 “도시계획법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국 세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박 순 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시세담당 김 계 속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계 속 (644-2188)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